

의안번호	2219920
의 퇴 인	박균택의원
회 답 일	2026.9.15.
추계번호	26C3504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부칙 제2조 (적용례)	민사 판결문의 공개범위를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부터로 확대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부칙 제2조 (적용례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민사 판결문의 공개범위를 확대¹⁾할 경우 판결서 공개를
위한 비실명화 처리 비용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○ 대법원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추가 공개대상인 판결문의 수는 총
3,144,528건임

[표 1]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공개대상 판결서 수

(단위: 건)

민사	행정 (선거 포함)	특허	합계
2,938,629	191,452	14,447	3,144,528

자료: 대법원

1) 참고로, 2025년 12월 30일 형사 판결문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하는 「형사소송법」이 공포되어
2027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

- 대법원은 2025년부터 판결서 건당 비실명 처리 단가를 7,112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, 최근 5개년 연도별 비실명 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연도별 비실명 처리 내역: 2021~2025년

(단위: 건)

구 분	공개사건		제공사건	합 계
	형사사건	민사사건		
2021년	237,097	203,970	60,594	501,661
2022년	210,109	220,363	70,371	500,842
2023년	217,731	290,285	53,454	561,470
2024년	219,620	274,764	57,385	551,759
2025년	222,833	258,472	62,695	545,118

주: 제공은 「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」 제2조에 따른 판결서 및 국회요구자료 등이 포함되며, 2023년부터 민간 미확정판결서 공개로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함
자료: 대법원

- 따라서 3,144,528건에 건당 단가 7,112원을 적용하면 223억 6,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□ 다만, 대법원은 판결서 공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재판사무시스템 내 비실명화 AI 기반 솔루션 도입을 추진 중인바, 해당 솔루션 도입 결과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

- 현재 연간 처리 건수인 55만건에 비해 개정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공개 건수가 과다하므로, 이를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임
- 대법원은 비실명화 AI 기반 솔루션 도입을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 10억 8,400만원을 편성하였으므로, 해당 솔루션이 도입되면 추가재정소요가 감소할 수 있음

-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 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박은비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은비	02-6788-4831	ebpark@assembly.go.kr